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1459호
-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제출일자 : 2016년 10월 31일
- 회부일자 : 2016년 11월 03일

## 2.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는 시청자의 미디어 접근권을 제고하고 권익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시청자미디어재단 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함('15. 12. 15.)
- 나. 업무 협약에 따른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출연여부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출연 대상기관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 1) 위 치 : 성북구 보문로 171 노블레스빌딩
- 2) 규 모 : 지상 2~3층(임차면적 521.4㎡ , 전용면적 396.6㎡)
- 3) 사업주체 : 시청자미디어재단(방통위 출연기관)
- 4) 주요시설 : 디지털교육실, 장애인방송제작실, 편집실, 사무실
- 5) 주요사업
  - 미디어교육 지원 : 미디어체험 프로그램, 콘텐츠 제작 교육 등
  - 시청자 방송참여 지원 : 방송제작을 위한 시설장비 무료대여 등
  - 소외계층 방송교육 지원 : 장애인 방송 서비스 제작지원 등

나. 출연의 필요성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에 따라 센터 운영비 지원 필요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

제5조(운영비 분담) ③ 센터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운영비는 센터 구축에 필요한 신규 시설장비와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담한다.

1. 방송통신위원회는 운영비의 60%를 분담한다.
2. 서울특별시와 성북구는 각각 운영비의 20%를 출연한다.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방송법」 제90조의2

**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17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업무 협약에 따른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음.
- 서울특별시는 2015년 12월 15일 서울시민 시청자의 미디어 접근권(Public Access)을 제고하고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성북구청, 시청자미디어재단과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비의 20%(2016년 예산 6천6백만원)를 분담하고 있음.

서울특별시는 2017회계연도에 앞서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의 기존 보조금 교부 방식을 「방송법」 제90조의2제7항 및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 제5조제1항제2조의 조항을 근거로 ‘출연금’으로 변경하고자 함.

##### 방 송 법

**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제5조(운영비 분담)** 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운영비는 센터 구축에 필요한 신규 시설비와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분담한다.

1. (생략)
2. 서울특별시와 성북구는 각각 운영비의 20%를 출연한다.

- 성북구 삼선동에 위치한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는 2015년 6월 30일 개관하여,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정회원 등록을 통해 미디어체험, 미디어강좌수강, 장비대여,

시설이용 및 라이브방송 등을 할 수 있는 미디어교육 복합공간으로 운영 중이며,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의 미디어강좌는 교육부 선정 ‘자유학기제 우수프로그램’에 선정되었고, 2016년 10월까지 총 203개의 강좌를 통해 38,693명이 미디어교육을 받는 등 시민들의 미디어 접근권에 대한 권리가 신장되었다고 평가됨.

DSLR, 4K비디오레코더 및 전문 미디어 장비대여 또한 대여자가 늘고 있는 추세이며, 향후 장애인·다문화가정·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미디어 복지를 점진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므로 시설이전 및 장비보유 확대를 예정하고 있음.

- 2017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출예산에는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출연금으로 계정이 변경되어 전년대비 27.8%인 1천8백만원이 증액된 8천3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에는 운영비의 20%를 분담한다는 협약만 맺어있을 뿐, 기간 및 정해진 액수를 출연한다는 것은 아니어서 센터의 운영방향 변화에 따라 향후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임.

□ 2017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5	2016(A)	2017(안)(B)	증감(B-A)	(B-A)/A
					(B-A)/A
계		66,000	84,325	18,325	27.8%
출연금		-	84,325	84,325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6,000	-	△66,000	△100%

또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에 의해 회계연도 종료 시 실적 보고 및 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반면, 출연금은 이에 대한 의무가 없으므로 변경 동의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지 방 재 정 법**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다만, 「방송법」에 시청자미디어센터에 관한 출연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의 경우도 운영비를 해당 지자체의 출연금으로 교부받고 있으므로 변경에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참고자료 1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

방송통신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하여 협력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방송통신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청자미디어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협력하여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운영함으로써 시청자의 미디어 접근권을 제고하고 권익을 증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분야)** 방송통신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단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필요한 경우 세부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방송통신위원회는 센터 설립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을 구축하고 미디어에 관한 교육,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 지원 등 방송법 제90조의2 제4항에 규정된 사업을 하는 센터를 운영한다.
2. 서울특별시와 성북구는 센터 설립에 필요한 적정공간을 제공하고, 센터 설립 및 운영에 대해 협조·지원한다.
3. 재단은 센터가 서울 전역의 시청자미디어지원 관련 사업의 허브 기능을 수행하도록 협력한다.

**제3조(설립공간)** 센터는 서울특별시와 성북구가 성북구 길음동 1286-8에 신축 예정인 길음동 복합문화시설 내에 설립하며, 서울특별시와 성북구는 센터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용공간을 확보하여, 2018년 하반기까지 독립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4조(임시운영)** 방송통신위원회는 센터 서비스를 조속히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와 성북구가 제공한 공간(성북구 삼성동 5가 171 노블레스빌딩 2~3층)에 2015년 6월에 구축한 센터를 제3조에 따른 공간에 센터가 설립될 때까지 임시 운영한다.

**제5조(운영비 부담)** 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운영비는 센터 구축에 필요한 신규 시설장비와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담한다.

1. 방송통신위원회는 운영비의 60%를 부담한다.
2. 서울특별시와 성북구는 각각 운영비의 20%를 출연한다.

② 운영비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상호 사전 협의한다.

**제6조(관리 및 운영)** 방송통신위원회는 센터 관리·운영을 재단에 위탁하며,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재단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발전협의회 구성)** ① 센터 운영에 대한 지역 참여와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센터 발전협의회를 둔다.

② 발전협의회는 관계 행정기관, 교육기관, 미디어 관련 학계·단체·업계 인사 등으로 구성하며, 방송통신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추천 및 의견을 반영한다.

③ 발전협의회는 센터의 사업·정책·예산 등에 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하며, 운영에 관하여는 재단의 정관 등 내부규정에 따른다.

**제8조(분쟁해결)** 본 협약에 대한 해석상의 이의나 분쟁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소송의 관할은 센터 소재지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9조(협약서의 효력)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종료 합의가 있을 때까지 지속된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를 4부 작성하여 당사자 별로 아래에 기명날인(또는 서명)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5년 12월 18일



서울특별시장

*Handwritten signature of the Seoul Metropolitan Mayor*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Handwritten signature of the Community Media Foundation Chairman*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Handwritten signature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Chairman*



성북구청장

*Handwritten signature of the Seongbuk-gu Office Chief*

[참고자료 2 :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금 교부 검토보고”]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금 교부 검토 보고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지원 방식을 기존의 보조금 교부에서 출연금 교부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추진근거

#### ○ 방송법 제90조의2제7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제5조제1항제2호

- 서울특별시와 성북구는 각각 운영비의 20%를 출연한다.

### 추진경과

○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요청(성북구→문화정책과) : '14. 1월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 : '15. 6. 30.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 '15. 12.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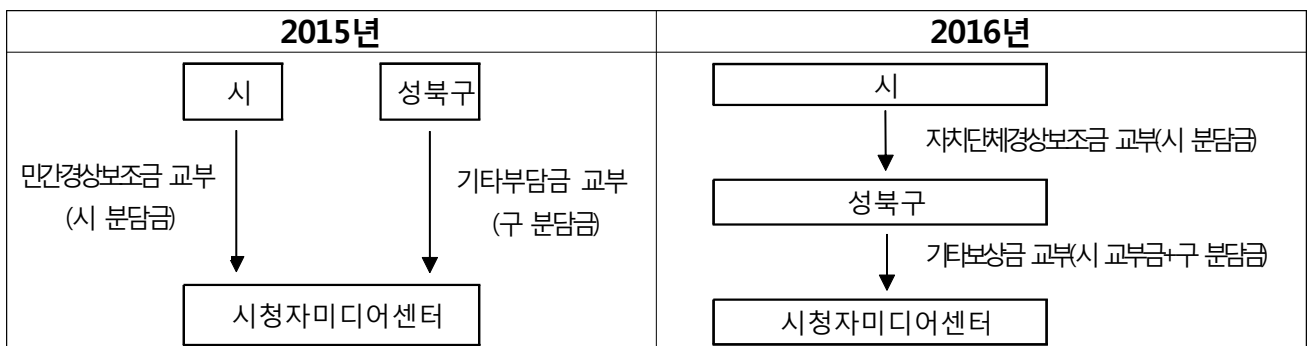
- 방통위 60%, 서울시 20%, 성북구 20%의 운영비 분담 협약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보조금 교부결정 : '15. 12. 16.

○ 2015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사업실적 및 정산결과 보고 : '16. 3. 24.

○ 2016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보조금 교부결정 : '16. 6. 24.

### 운영비 지원 현황





검토 의견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에는 운영비 분담 방식을 출연으로 명시했으나 실제로는 보조금(시→성북구)과 보상금(성북구→센터)으로 지급되고 있음
- 방송법에 출연 근거가 있고 협약서에 출연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타 지역 센터들도 지자체로부터 출연금을 교부받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17년도 예산은 보조금이 아닌 **출연금으로 교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보조금과 출연금 비교 >>

	보조금	출연금
지급근거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지자체의 조례로 정해진 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용도	법령에 명시적 근거 없으면 운영비로 교부 불가(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 용도 외 사용 금지(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용도 제한 없음
절차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4항)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지방재정법 제18조)
정산	실적 보고 및 정산 필요(지방재정법 제32조의6)	실적 보고 및 정산 불요

향후계획

- 제269회 정례회 출자출연 동의안 제출 : '16. 11월



[참고자료 3 : 전문위원실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현장시찰 사진]

○ 2016년 9월 26일 방문(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실)

	
<p><b>시청자미디어센터 입구</b></p>	<p><b>시청자미디어센터 교육일정</b></p>
	
<p><b>장비보유실</b></p>	<p><b>시민 주요 대여장비</b></p>
	
<p><b>장애인 시설장비</b></p>	<p><b>미디어 교육장비</b></p>
	
<p><b>1인 미디어 제작실</b></p>	<p><b>미디어 교육실</b></p>